

BBNJ 준비위원회 논의동향과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정방향

김선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제도연구실

A Study on the BBNJ Preparatory Committee Discussion and New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Kim, SunHwa*

* Ocean Law & Legal regime Research Section, KIOST, Ansan, 15627, Korea

2002년 지구환경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정상들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4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비공식 실무작업반회의(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회의라고 함)’가 설치되었다. BBNJ 회의가 설치된 이후 2015년까지 9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중략)

실무작업반은 유엔총회에 제출할 권고문을 마련한 바, 권고문에는 1) BBNJ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국제문서를 마련하고, 2)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를 개최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 논의하여 총회에 결과를 제출하고, 3) 그 준비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간 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6년부터 2년간 4차례 준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것이고, 2017년 4월 현재까지 3차례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중략)

10년 이상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한 쟁점은 준비위원회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새로운 국제법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새로운 국제문서는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등의 문제가 함께 그리고 전체적으로(together and as a whole) 다루어 져야 한다(2011년 package deal).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틀 내에서 제정되어야하므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을 공해와 심해저로 나누고 있고, 각 공간에 대한 명확한 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공해는 공해자유원칙, 심해저는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해와 심해저를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해자원에 대해서는 인류공동유산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공해자유의 원칙을 심해저에 적용시킬 수도 없다.

새로운 국제문서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술적인 내용이 매우 상세히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하나의 문서로 다루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운 국제문서의 모델로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략)